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·운영 및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8-231

제출년월일 : 2019. 10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「지속가능발전법」 및 「안산시 환경기본 조례」에 따른 '안산의제21' 실행 추진 기구 설치 및 운영·지원 규정 마련 필요

○ 협의회의 기능과 조직 구성 사항 규정 및 수행 활동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

☐ 주요내용

○ 협의회의 기능 (안 제4조)

○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·해촉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8조)

○ 협의회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3조)

○ 협의회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5조)

☐ 제정조례안 : 붙임1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☐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☐ 예산수반사항 : 붙임3

☐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9. 3. ~ 2019. 9. 16. (13일간)

☐ 기타 참고사항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4

환경정책과 - 마송희 - 2019-10-02 10:17:23 - ***.*.***.6

〈 붙임 1 〉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· 운영 및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속가능발전법」, 「안산시 환경 기본조례」에 따라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안산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경제의 성장, 사회의 안정과 통합,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지속가능성"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· 사회 ·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(低下)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.
2. "지속가능발전"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,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.

제4조(기능) ①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
2. 지속가능성 평가 · 모니터링
3. 지속가능발전 교육 · 홍보 및 조사연구
4.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이 조례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6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
2. 여성 · 청소년 · 노동 · 상공업 · 농업 등 여러 분야의 인사 중 활동 역량 및 의지가 충만한 사람

환경정책과 - 마송희 - 2019-10-02 10:17:23 - ***.*.***.6

3. 협의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등

4.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

③ 협의회는 사업감사와 회계감사 각 1인을 두고, 감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공동회장 등) 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, 시민·여성·기업가·교육자 등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5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.

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대표회장(이하 "회장" 이라 한다)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.

제7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

제9조(기구)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사무국

2. 운영위원회

3. 분과위원회

제10조(사무국)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

2.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·결산에 대한 사항

3. 총회·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

4.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
제11조(운영위원회)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환경정책과 - 마송희 - 2019-10-02 10:17:23 - ***.*.***.6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 담당 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의 심의
2.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
3.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
4.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
5. 공모사업의 심의·결정
6.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총회)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 공동회장,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

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3.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
4. 공동회장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
5.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

환경정책과 - 마송희 - 2019-10-02 10:17:23 - ***.*.***.6

체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·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경비의 지원)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협의회의 운영비
2.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16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) 협의회의 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「안산시 환경기본 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된 "안산의제21추진협의회"는 이 조례에 따른 "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"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안산시 환경기본 조례」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은 제5조에 따른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

소관 실·과		환경정책과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이 규 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팀장 이 선 희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마 송 희 (행정 2613)

환경정책과 - 마송희 - 2019-10-02 10:17:23 - ***.*.***.6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·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231

제안년월일 : 2019년 10월 24일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☐ 수정이유

○ 조례 제정 목적에서 상위법령인 "지속가능발전법"을 근거 규정으로 두고 "안산시 환경 기본조례"는 삭제함.

○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조문 제목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함.

☐ 주요골자

○ " 「지속가능발전법」, 「안산시 환경 기본조례」"를 " 「지속가능발전법」"으로 수정함.(안 제1조)

○ 조문 제목 "(기능)"을 "(협의회 설치 및 기능)"으로 수정함.(안 제4조)

○ 조문 제목 "(사무의 위탁)"을 "(사무의 위임·위탁)"으로 수정하고 "위탁할 수 있다."를 "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"로 수정함.(안 제16조)

의회사무국 - 정현석 - 2019-11-07 10:48:35 - ***.*.***.35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·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·운용 및 지원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"「지속가능발전법」, 「안산시 환경 기본조례」"를 "「지속가능발전법」"으로 한다.

안 제4조의 제목 "(기능)"을 "(협의회 설치 및 기능)"으로 한다.

안 제16조의 제목 "(사무의 위탁)"을 "(사무의 위임·위탁)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위탁할 수 있다."를 "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의회사무국 - 정현석 - 2019-11-07 10:48:35 - ***.*.***.35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·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원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속가능발전법」, 「안산시 환경 기본조례」에 따라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안산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지속가능발전법」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4조(기능) ① ~ ③ (생 략)	제4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~ ③ (원안과 같음)
제16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.	제16조(사무의 위임·위탁)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의회사무국 - 정현석 - 2019-11-07 10:48:35 - ***.*.***.35